|  |  |
| --- | --- |
|  |  |
|  |
| **{{용역명}}**  **과 업 지 시 서** | |
|  |  |
|  |

**{{날짜}}**

**{{발주기관명}}**

**Ⅰ. 설 계 설 명 서**

**1. 과 업 명 : {{용역명}}**

**2. 위치 및 면적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사업대상지 위치 | 사업대상지 면적 | 비고 |
| {{과업대상지}} | {{면적}} |  |

**3. 과업목적**

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 내외의 주변 환경과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․검토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파괴의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,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전하고 합리적, 경제적인 생활에 기여함.

**4. 과업개요**

가. 과업의 규모 : {{면적}}

나. 과업내용 :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

다.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{{과업기간}}

**Ⅱ.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일반 과업지시서**

**1. 목 적**

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관련 『별표4』규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 내외의 주변 환경과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․검토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파괴의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,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전하고 합리적, 경제적인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2. 과업내용**

가. 과 업 명 : {{용역명}}

나. 위치 및 규모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사업대상지 위치 | 사업대상지 면적 | 비고 |
| {{과업대상지}} | {{면적}} |  |

다. 과업내용

1) 환경영향 요인 분석에 따른 항목설정과 현황조사 사항

2) 검토 항목별 예측 및 평가

3) 저감 방안 및 대책수립

4) 결론 및 보고서 작성

**3. 과업범위**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, 성과품 납품까지임.

**4. 과업기간 :** 착수일로부터 {{과업기간}}

**5. 과업시 일반사항**

가.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전에 착수계, 과업수행 계획표, 대리인계,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{{발주기관명}}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.

다.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.

라. 본 과업수행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{{발주기관명}} 방침에 따라야 한다.

1) 과업의 변경요인

① 각 항목마다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

②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마.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요율, 정부노임단가 및 기술노임단가에 의한다.

바. 수급인은 각종승인, 허가협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면 인쇄물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제반업무를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.

사. 보안사항

①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.

② 과업 폐서류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, 불성실 보안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.

아. 설계변경 조건

①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

②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③ 본 항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, 기타 감사의 지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정산하거나 환수조치 한다.

④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품 과다 설계 발견시

⑤ 본 과업의 설계내역은 개발추정면적을 기반으로 산정되었는바, 개발면적이 축소될 경우 용역비를 준공시 정산한다.

**6. 일반지침**

가.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제반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나. 본 과업 검토시는 실시설계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는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수립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하여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다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.

라.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, 폐기물관리법, 자연환경보전법, 도시공원법 및 상위계통법, 국토 종합건설계획, 당해지역의 도시계획, 기타 법령 등에 만전을 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.

마. 평가서 완료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안 및 관련조치사항을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, 또한 환경청과 협의를 계속하여야 하며, 특히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환경청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.

바. 본 사업지역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(환경부예규-720호 2022.12.20.)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(환경부고시 제2023-72호 2023.4.13)을 준용한다.

사.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과업지시서의 일반지침에 따른다.

**7. 세부지침**

가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요인 분석에 따른 항목설정과 현황조사 분석

① 원칙적으로 사업지구의 내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포함된다.

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요인분석에 따라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.

③ 본 개발사업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환경항목은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시 본 개발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.

④ 현황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.

나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사 항목별 예측 및 평가

① 환경영향(1차 및 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)의 요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관계법규 및 관계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.

③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히 표현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정량근거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다. 종합평가 및 결론

① 현황 환경의 추이에 대하여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 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.

② 현황변화의 장래예측에 대하여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.

③ 영향저감을 위한 조치(환경변화의 방지대책)에 대하여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대책을 기술한다.

라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위치도, 지형도, 토지이용계획도, 현존식생도, 녹지자연도, 시설배치도, 시료항목별채취지점 위치도(대기, 수질, 소음․진동 등) 및 경관전경 천연색사진을 덧붙인다.

**Ⅲ.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세부 과업지시서**

**1. 환경영향 검토방법**

가.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

- 개발사업의 시행을 공사 진행단계, 공사완료 후의 각종 시설의 이용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

- 조사․예측 ․평가하여야 할 환경요소 및 검토항목은 아래사항을 참고로 하여 설정

ㆍ자연환경 : 기상, 지형․지질, 동․식물상

ㆍ생활환경 : 토지이용, 대기질, 수질, 친환경적 자원순환, 소음․진동

나. 분야별 중점 검토 사항

- 지형․지질

ㆍ지형형상조사 : 지형분류, 경사․표고분석, 특이지형 분포유무

ㆍ법면발생지역 및 사면처리방안

- 동․식물상

ㆍ자연생태계 보전지역, 야생동식물보호구역, 양호한 산림지역 등

ㆍ특정 야생 동․식물 및 천연기념물의 분포현황

ㆍ동물상(어류, 포유류, 조류)서식현황

ㆍ현존 식생도, 녹지자연도

ㆍ자연경관의 훼손 여부

- 토지이용

ㆍ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이용 계획

ㆍ주변경관과 자연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방안 등

- 대 기 질 :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수립여부

- 수 질

ㆍ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취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해당여부

ㆍ공사 및 이용 시 토사유출 방지대책

- 친환경적 자원순환 : 폐기물발생 및 처리계획

- 소음․진동 : 소음영향에 따른 저감 대책

- 위락․경관 : 개발에 따른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등

다. 환경현황의 조사

- 위 각항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요소 및 검토항목의 환경현황 조사

- 조사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지역으로 하되,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

- 조사방법은 현지조사와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를 병행실시

라.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

-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지역의 특성,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평가

- 예측범위는 공간적으로 환경현황의 조사범위로, 시간적으로는 공사시행중과 공사완료후로 구분설정

- 예측방법은 환경영향평가시 사용하는 예측기법을 활용하거나 기본 문헌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실시

마. 환경피해 저감방안

- 환경영향의 예측․평가결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계획내용 제시

ㆍ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우선적으로 보전

ㆍ사업지역의 위치, 규모,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․조정

- 환경기준 등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요소 및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

ㆍ발생원 저감방안 : 환경영향의 발생원에게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제거, 삭감, 정화하는 방안

ㆍ환경영향 완화방안 : 환경영향의 발생 후 피영향체에 도달하기 전에 그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안

ㆍ자연환경보전방안 :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물리적, 생태적 변화로부터 식물․동물 등의 자연생태계를 보전․보호하는 방안

**2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**

가. 사업개요 : 위치, 면적, 사업기간, 사업비, 사업자, 승인기관, 사업추진경위 등

나. 지역개황 : 환경기초시설, 문화재, 상수원보호구역, 생태계보전지역 등 포함

다.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

라. 환경영향조사,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

마. 종합평가결과

바. 결 론

- 영향검토결과에 따라 각 항목별 수립된 저감대책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도면은 별도 첨부

※ 참고사항 : 위치도는 1:50,000 또는 1:25,000지형도에 사업지구 위치를 표시

**3. 성과품제출**

가. 개별적으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에 따른 사업별 보고서를 각각 제출

나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0부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 과 품 | 규 격 | 부 수 | 비 고 |
| ∙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| A4 | 10부 |  |
| ∙ 현황조사 사진첩(천연색사진) | 〃 | 1부 |  |
| ∙ 전산화자료 CD 등 |  | 1식 |  |
| ∙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| A4 | 1식 |  |

**예 정 공 정 표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공종 | 계약일로부터 {{과업기간}}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비고 |
| 1 | | | | | | | | 2 | | | | | | | | 3 | | | | | | | |
| 1.사업 개요 파악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2.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3.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4.평가서 제출 및 환경청 협의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